

인지세 납부 안내문


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「인지세법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'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. 이에, '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' 계약예정자께서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/2 금액을 부담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시어 공급계약 체결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미첨부 시에는 공급계약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(전매시 분양권 전매계약서)				
납부기한	공급계약 - 공급계약 체결일(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)의 다음달 10일 ※ 분양권 전매시에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야 함.				
구입처	- 인터넷 구매 : www.e-revenuestamp.or.kr 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- 방문 구매시 : 우체국 및 은행 (현금납부만 가능)				
납부세액	주택형	과세기준	인지세액	사업주체 부담	계약자 부담
	전주택형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	7만 5천원	7만 5천원

※ 최초 공급계약시 인지세 납부주체는 '사업주체'와 '계약자'이며, 분양권 전매시 납부주체는 '매수자'와 '매도자'입니다.


온라인 구입 안내

1




네이버 및 그 외 포털사이트에
'전자수입인지' 검색
www.e-revenuestamp.or.kr

2



종이문서용
'전자수입인지' 선택

3



비회원서비스 or 회원 로그인 후
구매 버튼 클릭


4

용도	과세문서 종류	금액	건수	합계금액
1 인지세 납부	1. 부동산 등 소	75,000 원	1	
2 선택		원	0	원
3 선택		원	0	원
4 선택		원	0	원
5 선택		원	0	원

총 금액 원 총 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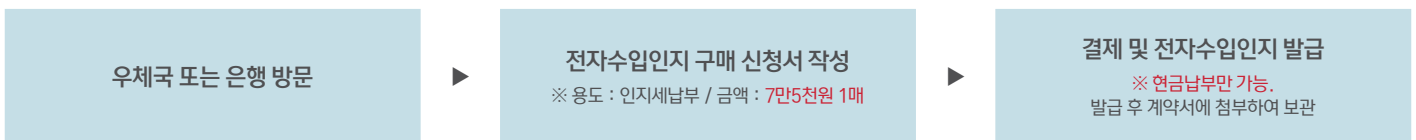
용도	과세문서 종류	인지세액	건수
인지세 납부	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	75,000	1건

5



출력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
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오프라인 구입 안내



※ 분양계약자께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공급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 인지세 미납으로 간주되오니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